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용기관과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 신청방식의 다양화(안 제2조 개정)

- 1)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
- 2)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심신상실 상태이면서 친족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지정된 민간 기관(신청지원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요건과 신청지원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처리기준 등 신청지원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나.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도입(안 제11조의2 신설)

- 1) 국민(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자)에게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함.
- 2)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신청과 안내 절차와 안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 3) 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중단이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중단 사실 등을 안내하도록 함.

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 1) 대상·사업별로 별도 운영되는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

- 2) 광역자활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3) 사회보장 자원 발굴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등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범위를 규정함.
-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제공, 통합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들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정함.

라. 공적자료 연계 확대(안 별표1 및 별표2 개정)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수기로 입력하던 정보와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수급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전산연계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연계 자료를 추가함에 따라 신규 공적 자료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

마. 전자문서 등의 보관 요건을 명시(안 제29조 신설)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에 따라 생성된 문서의 보존 형태로 원본 문서대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5조
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
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관 요건을 갖춘 전자
문서나 전자화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신청권자(지원대상자를
제외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신청권자가 지원대상자를 대신
하여 사실상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3항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이하 “신청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지원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가 보장기관에 직접 신청한 것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청문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⑧ 그 밖에 신청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신청지원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법 제22조의2제1항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후 수급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신청 방법 등을 신청인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중지하려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등의 중지 의사를 확인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인등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한 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등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단 사실과 재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3.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4.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지원 센터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업무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평가업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법 제24조의2제5항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4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④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 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관리하는 업무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업무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5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8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에 관한 사무

②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신청지원기관은 법 제5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전자문서 등의 보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

조부터 제8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생성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중 “관한 자료”를 “관한 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 중 “한국장학재단”을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장기요양자”를 “장기요양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장기간 하지 않은 사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바목 중 “가구의 정보”를 “가구의 정보 및 위기정보가 입수된 가구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관한 정보”로 하며, 같은 호 제5호아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자의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정보 및 가구원 정보
-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판정 정보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관한 정보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위탁 전담기관
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4조의2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보장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정보 중 수급자격 및 제3호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회보장정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유하는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및 복지용구 수혜이력에 관한 자료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보유하는 노인일자리 서비스 이력 및 수혜 정보, 노인일자리 참여에 관한 자료, 노인학대피해신고정보에 관한 자료,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이력 등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유하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국고보조 전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집행정보에 관한 자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이력에 관한 자료
10.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 이력에 관한 자료
11.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가 보유하는 치매관련 상담이력,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결과, 중증도, 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자료
12. 다른 법령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13.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입퇴원 정보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생략) <u><신 설></u>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현행과 같음) <u>②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관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할 수 있다.</u> <u>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신청권자(지원대상자를 제외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신청권자가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사실상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u>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
3항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
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사회보장
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법인·단
체·시설·기관 등(이하 “신청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지원기
관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
청권자가 보장기관에 직접 신청
한 것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지원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
의 장은 청문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⑧ 그 밖에 신청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신청지원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⑨ 법 제5조 제5항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법 제22조의2
제1항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
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
과 그 가구원(이하 “신청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급가능
성을 확인한 후 수급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신청 방법
등을 신청인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중지하
려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등의 중지 의사를 확
인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
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인등에
한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
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u>법 제24조제2항</u>에서 “대통령	<u>관의 장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할 수 있다.</u> <u>1. 사망한 때</u> <u>2. 국적을 상실한 때</u> <u>3.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한 때</u> <u>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u> ⑤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단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등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단 사실과 재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법 제24조제3항</u>-----
--	---

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2. (생략)

<신설>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3.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4.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 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52조제1

항제8호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업무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평가업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법 제24조의2제5항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4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④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 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관리하는 업무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과정에서의 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업무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

제26조(업무의 위탁) -----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5. (생략)

<신 설>

6. (생략)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
른 맞춤형 급여 안내

3.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
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

6. (현행과 같음)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illegible]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3. (생략)

<신설>

14. ~ 17. (생략)

<신설>

<신설>

-----.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에 관한 사무

14. ~ 17. (현행과 같음)

②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신청지원기관은 법 제5조 제4항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신 설>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전자문서 등의 보관) 보건
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조부터 제8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생성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같은 조 제
1항에 따라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